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49
----------	-----------

제출연월일	2011. 7. 1.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유소·주차장 등의 시설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비고 제1호).

○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나.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함(안 별표 1 제4호).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다.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분할 횟수 및 그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정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임

라.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상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시행 주체인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조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3항제1항).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사.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아. 그 밖에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순화함.

- 도로법 제43조 ⇒ 제41조, 제44조 ⇒ 제42조, 제75조 ⇒ 제84조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5. 26. ~ 6.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로, “도로의 구역안에서”를 “도로의 구역에서”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로 한다.

제4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1에”를 “별표 1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부과·징수하고자 하는”을 “부과·징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를”을 “점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중 “10%”를 “10퍼센트”로, “당해”를 “해당”으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을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호”를 “법 제42조제1호”로,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제3호”를 “법 제42조제3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 별표 1에서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 부과·징수하려는 ----- ----- --.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p> <p><단서 신설></p> <p><신 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p> <p>④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 ----- ----- ----- ----- 해당 ----- ----- 개시 후 3개월 -----.</p> <p>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p> <p>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 점용료를 ----- ----- .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 법 제84조에 따라 ----- ----- ----- ----- 점용료 중 ----- ----- .</p>

현행	개정안
<p>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⑥ ----- ----- 따른다.</p>
<p>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7조(점용료의 조정) ----- ----- ----- 10퍼센트 ----- ----- 해당 ----- -----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 -----.</p>
<p>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p> <p>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 -----이란 -----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p> <p>② 법 제42조제3호----- ----- 대통령령으로 -----이란 ----- ----- ----- 그 밖에 -----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p>

현행	개정안
<p>③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p> <p>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p>	<p>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p> <p>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p> <p>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p>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 간 단 위	2007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이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690	780	850	8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m	1년	150	170	190	200	20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00	340	380	400	4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600	690	780	850	8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200	1,370	1,540	1,650	1,65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500	1,720	1,930	2,050	2,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250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750	4,300	4,860	5,200	5,200	5,200
		지름 3.0m 초과			5,250	6,020	6,800	7,250	7,25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m	1년	200	230	260	290	30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50	510	570	600	6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900	1,030	1,160	1,250	1,2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350	1,540	1,740	1,850	1,8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800	2,060	2,330	2,500	2,50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250	2,580	2,910	3,100	3,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350	3,840	4,330	4,600	4,6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600	6,430	7,260	7,750	7,750	7,750
		지름 3.0m 초과			7,850	9,010	10,180	10,850	10,850	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9,900	9,900	9,900	9,900	9,9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14,350	16,210	17,250	17,2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50	50	50	50	50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		100	110	120	130	14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34,440	38,920	41,400	41,400	41,400		
	기타	표시면적 1㎡		15,000	17,220	19,460	20,700	20,700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110	120	130	14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